



제 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임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238호)

2024.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 재 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1
IV . 검토의견	4
1. 나무의사의 보호수 정기점검에 관한 근거 마련 등	4
2. 나무병원 미등록자에 의한 수목진료의 예외적 범위	7
3.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업무 및 재정적 지원	10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임미애의원 등 15인

나. 발 의 일 : 2024. 9. 24.

다. 회 부 일 : 2024. 9. 25.

II.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목 피해의 진단·처방·예방 및 치료(이하 “수목진료”라 함)를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나무의사 자격을 부여하고,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는 일정한 기술·자본금 등 등록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나무병원으로 등록하도록 하며, 원칙적으로 등록된 나무병원의 나무의사만이 수목진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8년 나무의사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목진료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아 업무 범위에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나무의사들의 역량강화와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안정적 업무 수행을 위해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수행 업무와 경비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수목진료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등 안정적인 수목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목진료 정의를 명확히 하고, 나무병원에 의한 수목진료제도의 예외적 적용대상에 공동주택의 수목을 포함하도록 하며, 한국나무의사협회 업무를 재정비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수목을 비롯한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나무의사는 보호수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수목진료와 이력관리 등을 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제3항 후단 신설).

나.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9제6항 신설).

다. 한국나무의사협회는 수목진료에 관한 교육·훈련, 연구·조사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21조의11제4항 신설).

라. 산림청장은 나무의사 등의 자격 및 경력 등에 관한 정보체계인 수목진료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21조의15 신설).

마. 나무의사 등이 나무병원에 종사한 경력등을 인정받으려면 산림청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산림청장은 신고받은 나무의사 등의 경력 등에 관한 내용을 수목진료정보체계에 등재하여야 하며, 나무의사 등이 신청하는 경우 수목진료경력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21조의16 신설).

IV. 검토의견¹⁾

1. 나무의사의 보호수 정기점검에 관한 근거 마련 등

개정안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보호수를 이전하여 관리하는 경우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나무의사가 보호수의 정기점검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안 제13조의2).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① (생략)	제13조의2(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수를 <u>이전</u> 하는 경우에는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 <u>이전하여 관리</u> ----- -----.
③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보호수의 질병 및 훼손 여부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 ----- ----- ----- ----. <u>이 경우 정기 점검은 나무의사가 하여야 하고 나무의사는 보호수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수목진료와 이력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u>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1) 개정안의 내용 중 이미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의결된 어기구위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221588, 2024.7.10.)과 동일한 내용도 있는바, 이들 내용에 대한 검토는 생략함.

현행법은 나무의사의 보호수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및 이력관리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나무병원에 의한 전문적 수목진료 제도의 도입 취지를 반영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개정안에서는 나무의사에 의한 보호수의 정기점검 및 나무의사의 보호수 이력관리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수목진료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려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개정안에 따를 경우, 보호수 “이전”만 하는 경우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이 없이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어 현행보다 그 범위가 축소될 우려가 있고, 보호수 “관리”의 경우 신설되는 안 제3항 후단 나무의사에 의한 보호수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과 중복되는바, 개정실익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산림청도 이에 대해 동의하고 있음.

둘째, 안 제3항 후단 중 나무의사의 보호수에 관한 수목진료 및 이력관리 의무화에 관한 사항도 현행법 제21조의12제1항2)에 따른 나무의사의 처방전 발급의무와 중복되는 것으로 보임.

2) 제21조의12(처방전 발급 등) ① 나무의사는 진료부를 갖추어 두고 자기가 직접 수행한 수목진료 사항에 대해 진료부에 기록·서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처방전·진단서 또는 증명서(이하 “처방전등”이라 한다)를 발급한다.

셋째, 안 제3항 후단은 나무의사로 하여금 보호수의 정기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 제21조의9제4항제2호3)에 따라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에 대한 수목진료는 나무병원으로 등록한 자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나무의사”를 “나무병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논리적 연결을 위하여 후단의 위치를 나무병원에 의한 수목진료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21조의9로 이동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
- 3) 제21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④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은 제외한다)

2. 나무병원 미등록자에 의한 수목진료의 예외적 범위

개정안은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수목진료의 예외적 범위를 i)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히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ii) 수목 소유자(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 iii)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에 따라 자치관리하는 공동주택(150세대 미만인 경우)의 관리소장 또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나무병원의 명칭이나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9).

현행	개정안
제21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① ~ ③ (생략) ④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할 수 없다. <u>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1.·2. (생략) ⑤ (생략) <u><신설></u>	제21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단서 삭제></u> 1.·2.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현행	개정안
<신설> ⑥ (생략)	호의 경우에는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를 할 수 있다. 1. 산림병해충 피해가 급격히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하는 경우 2. 개인소유의 수목으로서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 3.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에 따라 자치관리하는 공동주택(150세대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 ⑦ 이 법에 따른 나무병원으로 등록한 자가 아니면 나무병원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 (현행 제6항과 같음)

이는 나무병원에 의한 수목진료제도의 예외적 범위를 기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하는 경우에서 긴급히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하는 경우로 축소하는 한편, 기존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는 예외적 적용대상에서 150세대

이상인 자치관리 공동주택에 서식하는 수목을 제외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수목진료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우리 위원회는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는 어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심사하여 “나무병원 미등록자에 의한 수목진료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현행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수정의결(「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2024.9.25.)하였고, 이 수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업무 및 재정적 지원

개정안은 한국나무의사협회(이하 “협회”)의 업무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협회의 소요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11).

현행	개정안
제21조의11(한국나무의사협회) ① · ② (생략) ③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협회의 업무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신설></u>	제21조의11(한국나무의사협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사항</u> ----- ----- -----.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u>1. 수목진료에 관한 교육·훈련</u> <u>2. 수목진료에 관한 연구·조사</u> <u>3. 수목진료 기술진흥 및 정보 교류</u> <u>4. 나무의사의 현황관리 및 경력증명서 발급</u> <u>5. 수목진료에 관한 행정기관의 위탁업무</u> <u>6.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u> ⑤ 협회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비
<u><신설></u>	

현행	개정안
④ (생략)	<u>는 회비·사업비·위탁수수료 등으로 충당하고, 산림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현행법은 협회의 업무 등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의 내용은 정관으로 규정될 내용의 기본적인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이에 개정안은 협회의 업무범위와 경비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나무의사들의 역량 강화와 협회의 안정적인 역할수행을 통해 수목진료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데에 입법의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협회가 수행하는 해당 업무의 성격과 중요도 여부를 고려할 때,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법제실무상 특수법인이 국가적 사무를 수행하거나 공익 달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는 경우에는 그 운영재원을 국가나 지

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음.

이와 같은 측면에서 살펴볼 때, 협회는 현행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협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재원을 확보·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협회의 소관 업무가 공익 달성을 위한 것이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탁 비용 이외에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협회는 영리를 추구하는 나무병원을 운영하는 나무의사로 구성된 조직이고, 업무는 수목진료에 관한 교육·훈련 및 연구·조사, 나무의사의 현황 관리 및 경력증명서 발급 등으로 공익성보다는 민간 조직으로서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됨.

즉,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협회에 대한 재정지원은 해당 협회의 수행 업무가 공익성이 매우 높아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협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수목진료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입법취지, 협회의 설립목적 및 업무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423